

현대인베스트먼트 아비트리지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 신탁계약서

협회펀드코드 : BP748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께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와 신탁업자인 **삼성증권(주)**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말한다.
3.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증권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채권형"이라 함은 자산총액 중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저 편입한도가 6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7.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0.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1. "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2. "협회"라 함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현대인베스트먼트 아비트리지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채권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사모형
6.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3조의3(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4 조의 2(전담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중개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1>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증개·주선이나 대리업무<1>
2. 금전의 융자 또는 신용공여<1>
3.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1>
4.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주문 체결업무<1>
5.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1>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증개, 주선, 대리업무<1>
7.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증개, 주선, 대리업무<1>
8.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업무<1>
9.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1>
10.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 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를 하는 업무<1>

제 4 조의 3(업무의 위탁) 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② 제 1 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신탁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1>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 제76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제3항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를 한 때에 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당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 양도시 양수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제16조의 2(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1>

1.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1>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1>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등"이라 한다)<1>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1>

5.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1>

6. 환매조건부매매<1>

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1>

8. 증권의 차입<1>

9.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1>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1>

3. 환매조건부매수<1>

4. 양도성예금증서<1>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제16조의 3(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6조의2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1.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1>

2.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1>

3. 어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1>

4.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1>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 이하로 한다.<1>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총액의 400% 이하로 한다.<1>

7. 환매조건부매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0% 이하로 한다.<1>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총액의 200% 이하로 한다.<1>

9.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400% 이하로 한다. 다만, 금전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차입과 금전차입을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4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1>

제16조의 4(자산운용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4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1>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3.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4. (삭제)<1>
- 5. (삭제)<1>
- 6. (삭제)<1>

제16조의 5(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1>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1>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1>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1>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의3 제4호부터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1>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1>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1>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1>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1>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1>
- ③ 제2조제5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 ④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6조의2 제1호 및 제16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 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7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8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투자신탁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7조의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및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9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0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1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잔고가 제3조의2제2호의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법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21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환매연기) ① 제21조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나.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⑥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24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제26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7년 9월 26일까지로 하며, 그 이후 회계기간은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2>

제27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 ②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1><2>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29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32조(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3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5<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0

제 34 조(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5조(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1>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1>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7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의 수익증권 중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및 운용제한(금전차입 등을 포함한다) 등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3. 신탁업자의 변경(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38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의 수익증권 중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신탁업자의 변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39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챈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챈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챈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41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삭제)<1>

- ② (삭제)<1>
- ③ (삭제)<1>
- ④ (삭제)<1>
- ⑤ (삭제)<1>

제44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공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관련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6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2>

제47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김석중 (印)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증권(주)

대표이사 윤용암 (印)